

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현황 및 대응방안

2022. 12. 26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. EU CBAM 주요 내용	1
II. 국내 산업계 영향 전망	2
III. 그간의 대응경과	3
IV. 국내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	4

I . EU CBAM(탄소국경조정제도) 주요 내용

1 (배경) EU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 CBAM 도입 추진

- (취지) EU 內 환경규제 강화*로 인한 탄소누출** 발생 방지
 - * '30년까지('90년대비) 탄소 55% 감축을 위한 기후대응 패키지("Fit for 55") 발표('21.7)
 - ** 탄소 多배출산업이 환경低규제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온실가스 배출 규제 효과 감소
- (현황) EU 집행위·이사회·유럽의회간 CBAM 입법(안) 합의(12.18)
 - * (향후일정) 이사회·유럽의회 각각 승인 → 관보 게재 및 발효 → 위임·이행법안 수립

2 (주요내용) 6개 업종 대상, '23.10월부터 전환기간을 거쳐 '26년 시행

구 분	대상 품목	전환기간 (보고의무)	CBAM 시행	운영 기관	배출 범위	EU ETS 무상할당 폐지
집행위(안) (‘21.7.14) = 이사회(안) (‘22.6.29)	5개 철강, 알루미늄, 시멘트, 비료, 전력	‘23~‘25년 (3년)	‘26.1월~	EU 회원국 개별 운영 중앙등록처 신설	직접배출	‘26~‘35년 (10년)
유럽의회(안) (‘22.6.22)	9개 (추가)플라스틱, 유기화합품, 수소, 암모니아	‘23~‘26년 (4년)	‘27.1월~	중앙등록처 신설	직접배출 + 간접배출	‘27~‘32년 (6년)
최종법안 (‘22.12.18)	6개 철강, 알루미늄, 시멘트, 비료, 전력, 수소	‘23.10~‘25년 (2년3개월)	‘26.1월~	중앙등록처 신설	직접배출 + 간접배출 (특정조건下)	‘26~‘33년 (8년)

- (대상품목) 철강·알루미늄·시멘트·비료·전력·수소 등 총 6개 품목
 - EU는 전환기간 동안 플라스틱·유기화합품 추가여부 결정 계획
- (시행시기) ‘23.10월 전환기간 개시, ‘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
 - * 전환기간 : 배출량 보고의무만 존재 → 본격시행 : CBAM 인증서 구매의무 발생
 - CBAM 본격 시행 이후 ‘26~‘33년간 EU ETS 무상할당 폐지 추진
- (배출범위) 본격 시행시 특정조건(현재未발표)下 간접배출* 포함 예고
 - *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 외 외부로부터 구매한 열전기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

⇒ CBAM 최종법안은 유럽의회(안) 대비 대상품목이 축소되고, 무상할당 폐지일정이 다소 완화되어 우리 기업의 우려 일부 해소
* 단, 전환기간 동안 품목 확대 여부 및 간접배출 포함조건을 예의주시할 필요

II. 국내 산업계 영향 전망

1 [수출업종] CBAM 본격 시행시 對EU 철강 수출에 주로 영향 예상

【 업종별 對EU 수출량 ('21년, 무역협회) 】

(단위: 억불)

구분	철강	알루미늄	비료	시멘트	전력	수소
'21년	43	5	0.05	0.01	0	0

○ (철강) 對EU 철강 수출액*이 많고, 고로비중**이 높아 영향 예상

* EU 주요 철강 수입국('21년) : 터키>러시아>인도>우크라이나>⑤한국>⑧중국

** 고로전기로 비중 : (한국)68:32, (EU)59:41, (중국)90:10, (일본)76:24, (러시아) 71:29, (인도)44:56

○ (알루미늄) 투입재(잉곳) 생산 공정의 탄소배출량이 높아 영향 예상

* 전체 탄소배출량의 95%가 배출되는 잉곳을 말레이시아, 호주 등지에서 전량 수입 중

※ 전환기간 동안 플라스틱·유기화학품으로 대상품목 확대 시 우리 對EU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 확대 우려

* 21년 對EU 수출량(무역협회) : 플라스틱 50억불, 유기화학품 18억불

2 [행정/비용부담] 전환기간중 보고의무, 본격 시행시 CBAM 인증서 구매의무

○ (전환기간) 수출기업의 분기별 탄소배출량 정보* 보고의무 존재

* △수출량, △수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, △원산지에서 旣납부한 탄소가격 등

○ (본격시행) 무상할당이 유지*되는 동안 實부담은 크지 않으나, EU ETS 무상할당 폐지일정**에 따라 인증서 구매 필요량 증가 예상

* EU는 EU ETS 무상할당 비중만큼 CBAM 인증서 구매 수량을 감면할 계획

** 8년간 가속적 폐지 : ('26) 2.5% → ('27) 5% → ('28) 10% → ('29) 22.5% → ('30) 48.5% → ('31) 61% → ('32) 73.5% → ('33) 86% → ('34) 100%

Ⅲ. 그간의 대응경과

① [對EU 협의] 양자·다자채널 통해 CBAM 입법(안)의 개선 지속 요구

- (양자) EU 집행위·유럽의회와의 소통으로 우리 입장 적극 설명
 - 통상교섭본부장, EU CBAM 관련 핵심인사와 협의('22.12)
 - * EU 집행위 조세·기후·통상총국 최고위 관계자,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부위원장
 - 정부의견서(non-paper)를 통해 CBAM 도입시 WTO에 합치하는 제도 설계와 우리 기후제도(ETS 등)의 충분한 고려 요구
- (다자) WTO 정례회의*에서 우리 입장 지속 제기
 - * 시장접근위원회, 상품무역이사회, 무역과환경대화(TESSD) 등

② [산업계 협의] 산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민관 공동 대응방안 모색

- (민관합동 논의) 산업계, 연구기관, 지원기관과 대응방안 논의*
 - * 탄소통상 자문단('22.1~), CBAM 철강협의체('21.7~), 본부장 주제 산업계 간담회('22.11)
- (정보공유) 기업 대상 세미나*를 통해 CBAM 동향·영향·대응방안 설명
 - * 한-EU 인포세션('21.11),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('22.4), CBAM 대비 대응전략 세미나('22.12)

③ [범부처 협의]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전략 마련

- (고위급협의) 대외경제장관회의/통상추진위원회*에 안건 상정·논의
 - *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('21.9), 제28차/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('22.7/'22.11)
- (부처협업) 산업부 중심으로 CBAM 대응 관계부처 TF*를 구성
 - * 산업부(신통상전략실장 주제), 국조실(탄녹위), 기재부, 외교부, 환경부, 중기부
 - 국무조정실장 주제 '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' 개최('22.12)

IV. 국내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

①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

* 「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」(’23~’30년, 철강산업 지원은 총2,097억원 규모)

○ (철강) 저탄소 생산구조*로의 전환을 통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

* (예) CCUS 기법 활용, 고로→전기로 전환 등 추진 예정

- [단기]現 설비 조건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개발* 지원, [중·장기] 단계적으로 수소환원제철** 공정설계 기술개발 지원

* 무탄소 연료·원료 사용 하이브리드 제선기술, 전기로 효율성을 위한 에너지 순환기술 개발 등

** ’23~’25년 기초기술지원(269억원) 후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실증지원 추진(’26~)

② 중소·중견기업을 포함한 對EU 수출기업의 CBAM 대응역량 강화

○ (정보공유) 실무자 가이드북 제작·배포, 對EU 수출설명회* 추진

* EU CBAM 최종법안 분석결과 및 보고의무 이행방안 등 공유

○ (MRV) 배출량 측정·검인증 실무자 교육, 간이 MRV 시스템* 개발

* 에너지(연료·열·전력 등) 사용현황을 토대로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→ 에너지공단 증빙자료 확인 및 검증확인서 발급(산업부·중기부 협업)

③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·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 확충

○ (검증기관 육성) 국내 검증기관* 역량 강화 지원, 국제인정기구 가입

* 현재 로이드, 한국품질보증원, 한국표준협회 등 15개 민간검증기관 운영 중

○ (국제표준)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관련 국제표준 개발* 추진

* 현재 제품 탄소배출량(ISO 14067) 산정을 위한 제품별 국제표준은 철강·건설 등 8개에 불과

○ (LCI DB*)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DB 확대

* Life Cycle Inventory DB : 원·부자재(철광석, 유연탄) 등 제품 전과정 탄소배출량 정보(현재 793건)

④ 금융시장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 감축환경 조성

○ (자금지원)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 지원을 위해 녹색금융 확대*

* 녹색채권 3.9조원, 녹색금융 이차보전 3.5조원 등 ((’22) 3.8조원→(’23) 9.4조원)

○ (배출권거래제) 자발적 감축유인 강화를 위한 배출권시장 활성화* 추진

* 배출권시장 제3자 참여 확대, 증권사 위탁거래 도입, 배출권 선물 도입방안 등 검토

[부처별 향후 추진계획]

추진 과제	주관 부처
□ 국내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	
① 탄소 多배출 업종의 탈탄소화 기술개발 지원	산업부, 환경부, 기재부
② 중소·중견기업 등 수출기업 지원(설명회, 가이드북 제작 등)	산업부, 환경부, 중기부
③ 배출량 측정 검인증 비용 지원, 간이 MRV 시스템 개발	산업부, 환경부, 중기부
④ 국내 검·인증 기관 육성 및 국제인정기구포럼 가입	산업부, 환경부, 기재부
⑤ 국제표준 개발 및 제안	산업부
⑥ 탄소배출량 산정 기초정보 데이터(LCI DB) 확대	산업부, 환경부, 기재부
⑦ 금융시장 등을 이용한 탄소감축 환경 조성	산업부, 환경부, 기재부